

④ 문화·관광 분야

개정 전	개정 후
<p><①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취득 부동산 감면 §54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(감 면 율) 취득세 <u>25%</u>(조례 +25% 可)○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☞ 일몰 3년 연장 및 지역별 감면율 차등 재설계○ (감 면 율) 취득세 : <u>수도권 10%,</u> <u>비수도권 25%,</u> <u>인구감소지역 40%</u> (조례 +25% 可)○ (일몰기한) <u>2028.12.31.</u>

< 개정내용 >

- (①)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감면 연장 하되,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, 비수도권, 인구감소지역에 차등을 두어 감면율 재설계 및 3년 연장